

제2020-4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록

1. 회의개요

- 일 시 : 2020. 12. 28.(월)
- 장 소 : 수도권 코로나 2.5단계로 인해 서면회의 진행
- 참 석 자 :
 - 청렴시민감사관 : 김진욱(변호사), 김효철(회계사), 박진호(노무사)
 - KIST : 정현진(윤리실경영장), 이수진(담당자)

2. 안건

- 안건 1 : 하반기 반부패·청렴 활동 보고
- 안건 2 : (권익위원회)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보고
- 안건 3 :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보고

3. 회의내용

- 안건명 : 하반기 반부패·청렴 활동 보고
 - 보고내용
 - 하반기 반부패·청렴 활동을 비롯한 윤리경영실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함.

추진일정	업무구분	목적 및 기대효과
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추석연휴 대비 「청렴주의보」 발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간: 9.21(월)~10.4(일)(2주간)○ '20년 청렴 및 갑질(직장 내 괴롭힘)예방교육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일자: 9.25(금) 10시~12시/ 인터넷생방송 교육○ 3/4분기 반부패청렴추진단 회의 개최(서면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일자: 9.25(금)○ 3/4분기 청렴시민 감사관 회의개최(서면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일자: 9.28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청렴의식 고취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- 직장 내 갑질 예방과 상호존중문화 조성

추진일정	업무구분	목적 및 기대효과
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」 홍보 동영상 게시 (권익위원회) - 게시일: 10.6(화) ○ 2020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- 주관부처/제출일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/10.13(화) ○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결과 제출 - 주관부처/제출일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/10.13(화) ○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(매달 11일) 「성별에 따른 차별적 단어사용 지양 안내」 ○ 인권경영 2차 교육 (온라인) - 기간: 10.16(금)~10.27(금) ○ 아동학대 예방교육 (온라인) - 기간: 10.19(월)~10.30(금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적 차원의 청렴문화 시스템 정착 인지·공유 -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보호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
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(매달 11일) 「혐오차별 예방(혐오표현 정의 및 예시 안내)」 ○ 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홍보 - 기간: 11.6(금)~11.30(월) ○ 4대폭력 예방교육 (온라인) - 기간: 11.9(월)~11.30(월) ○ 공직자 등에 대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실태점검 - 기간: 11.18(수)~11.30(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적 차원의 청렴문화 시스템 정착 인지·공유
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020-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(12월 16일) ○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시행 - 기간: 12.16(수)~12.22(화) ○ 연말연시 대비 「청렴주의보」 발령 - 기간: '20.12.21(월)~'21.1.8(금)(3주간) ○ 4/4분기 반부패청렴추진단 회의 개최(서면) - 일자: 12.24(목) ○ 4/4분기 청렴시민 감사관 회의개최(서면) - 일자: 12.28(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렴의식 고취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-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보호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

□ **안전명** : (권익위원회)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적 보고

○ **보고내용**

- (권익위원회)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을 보고함.
- ‘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’ 은 동법 제53조에 의거 언론공표 등을 통해 기관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.

○ **이행실적**

- 권고과제명 :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
- 추진실적 : 「휴직자 복무관리 기준」 제정 및 시행
- 시 행 일 : '20. 5. 11

□ **세부과제명** : 휴직자 복무관리 세부기준 마련

구분	추진 실적
1. 휴직의 목적 외 사용개념 명시	<p>○ 휴직의 목적 외 사용개념 명시</p> <p>3. 휴직자 복무관리</p> <p>나. “휴직의 목적 외 사용” 이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「인사규정」 제31조에 따른 타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.</p>
2. 정기적인 휴직 실태점검	<p>○ 휴직의 목적 외 사용개념 명시</p> <p>5. 휴직실태점검</p> <p>가. 휴직실태 점검은 인사 주무부서의 장이 정기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할 수 있음.</p> <p>나.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,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점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성 2)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) 고의성 여부 4)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) 기타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<p>다. 점검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이는 경우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,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</p> <p>라. 그에 대한 정기보고는 연 2회(1월, 7월)에 하고 필요시 수시보고 할 수 있음</p>
3. 휴직자의 복무상황 정기적 보고	<p>○ 휴직의 목적 외 사용개념 명시</p> <p>4.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</p> <p>가. 휴직자는 붙임 2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반기말일(6월30일, 12월31일)까지 인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,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</p>

	<p>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,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복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.</p> <p>나. 휴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국가, 체류기간, 연락방법, 연락처 등을 인사 주무부서의 장에게 붙임 3 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함. 단, 단기(14일 이하) 국외 출국과 영유아를 동반한 육아휴직자의 국외 출국의 경우 신고를 생략 할 수 있음.</p>
<p>4.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을 통해 복직명령 등 적절한 조치 규정</p>	<p>○ 휴직의 목적 외 사용개념 명시</p> <p>6.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</p> <p>가.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할 수 있음</p> <p>나.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 등 불이익조치 할 수 있음</p>

□ 안건 3 :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보고

○ 보고내용

- 상위법령인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을 반영하여 KIST 임직원행동강령의 일부 조항 개정 및 신설에 대해 보고함.
- 조직개편 (윤리경영실 신설 / '20.8.19) 및 인사발령 ('20.9.1)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의 변경에 대해 보고함.

○ 시행일 : '20년 12월 1일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제5조 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) 중 일부 조항 개정
- 제38조 (교육) 중 교육 결과 기록·관리 조항 신설
- 제39조 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을 윤리경영실장으로 개정

구분	개정내용
(제5조)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	▪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제10조 5항의 사항 반영
(제38조) 교육	▪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제23조 3항의 사항 반영
(제39조)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	▪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(경영관리실장 → 윤리경영실장)

※ 첨부 : 임직원 행동강령 신·구 조문 대비표

<임직원 행동강령 신규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5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) ①~③ 생략</p> <p>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.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. 직무 재배정 4. 전보 <p>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·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. <u>공의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</u> 	<p>제5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) ①~③ 좌동</p> <p>④ 좌동</p> <p>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·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. <u>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의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</u> <개정 2020.12.11> 	
<p>제38조(교육) ①~④ 생략</p>	<p>제38조(교육)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11></p>	5항 신설
<p>제39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 ① 파기연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경영관리실장으로 한다.</p>	<p>제39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 ① 파기연의 행동강령책임관은 <u>윤리경영실장</u>으로 한다. <개정 2020.12.1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2020. 12. 1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강령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강령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</p>	

위 사실을 확인함.

2020. 12. 28.

윤리경영실장 정 현 진 (인) 정현진

청렴시민감사관 김 진 옥 (인) 김진옥

청렴시민감사관 김 효 철 김효철

청렴시민감사관 박 진 호 (인) 박진호

간 사 이 수 진 이수진